

##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03월 14일



1. 고 시 명 :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
2. 대 상 지 : 구로구 궁동 산11-22 등 6개소
3. 지정사유 :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4. 고시일자 : 2024. 3. 14.
5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: 붙임3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공원녹지과(☎02-860-30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필지별 내역 1부.

2.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도면 각 1부.

3.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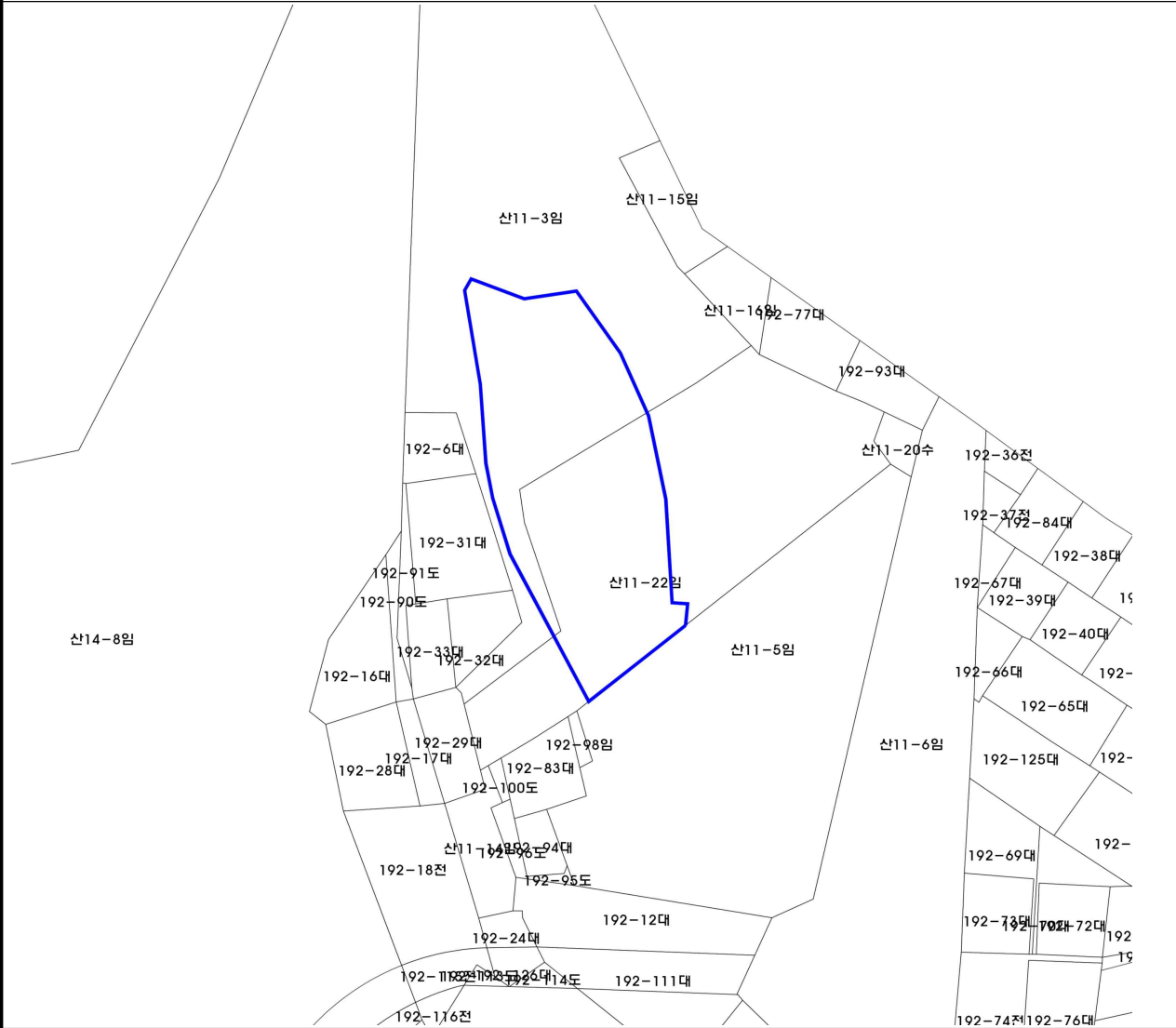
###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내역

구분	산림소재지				지목	지적 (㎡)	지정 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시	구	동	지번				주소	성명	
1	서울 특별시	구로구	궁동	산11-3	임야	1,563	1,193	서울특별시	기독교한국침례 회연세중앙교회	
				산11-22	임야	1,653	732	서울특별시	김헌주	
2	서울 특별시	구로구	궁동	산1-12	임야	6,744	995	서울특별시	고재영	
3	서울 특별시	구로구	개봉동	산2-44	임야	1,063	173	서울특별시	용필순	
				산2-45	임야	23,380	530	서울특별시	광산김씨참의공 중군계원파중중 외	
				산2-72	임야	11	3	서울특별시	구로구	
4	서울 특별시	구로구	오류동	산13-4	임야	200	120	서울특별시	조은숙	
				산13-8	임야	2,732	160	서울특별시	국유림	
				산13-7	임야	193	15	서울특별시	정희숙 외 3명	
				145-195	공원	161	70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	
				산15-11	임야	1,433	60	서울특별시	대한예수교장로 회평강제일교회	
				333-15	임야	1,814.4	15	서울특별시	조은숙	
				333-4	임야	342.8	10	서울특별시	국유림	
5	서울 특별시	구로구	오류동	산16-18	임야	95,066	358	서울특별시	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	
6	서울 특별시	구로구	항동	76-1	전	3,816	50	서울특별시	에스에이치공사	
				산34-1	임야	9,574	200	서울특별시	허경옥외 2명	
				산34-6	임야	3,273	220	안양시	김상현외 8명	

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

번호 : 제2024년 - 01호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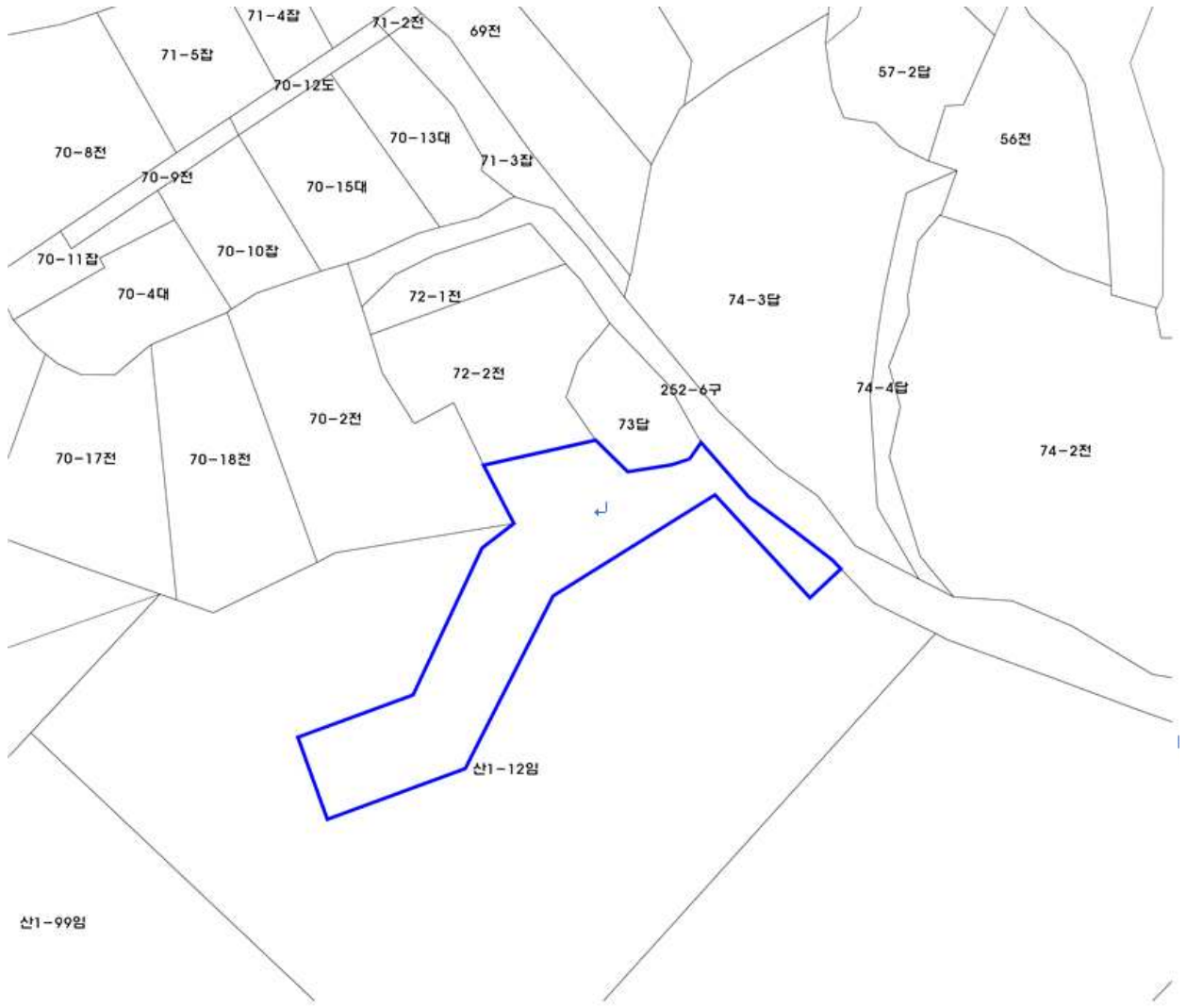


<보기>  : 산사태취약지역

<지정내용>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
시·구·동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	고시번호·일자
서울·구로·궁	산11-3	임	1,563	1,193	
	산11-22	임	1,653	732	
계			4,869	1,925	

###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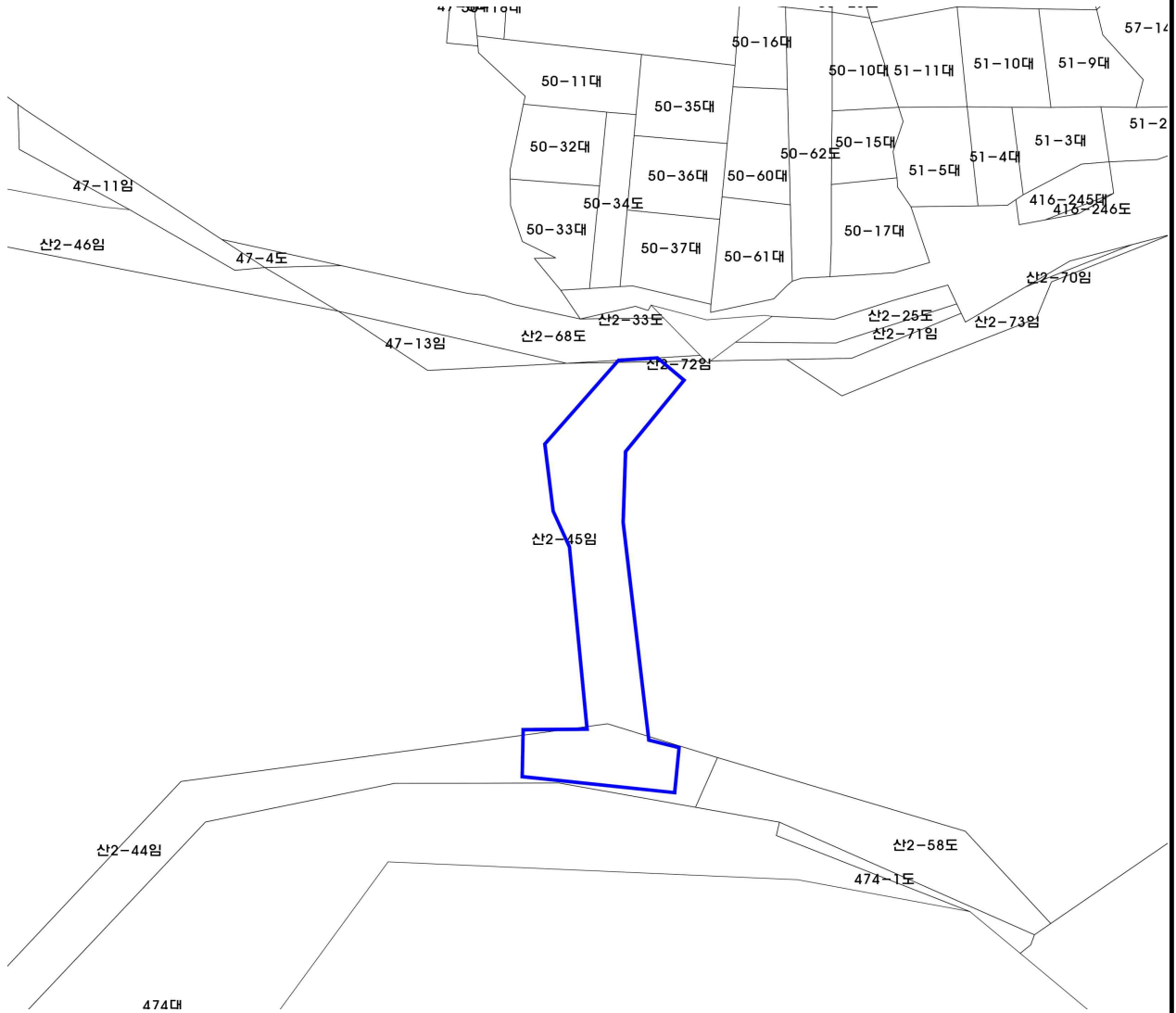


<보기>  : 산사태취약지역

<지정내용>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
시·구·동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	고시번호·일자
서울·구로·궁	산1-12	임	6,744	1,105	
계			6,744	1,105	

###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



<보기>

: 산사태취약지역

<지정내용>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
시·구·동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	고시번호·일자
서울·구로·개봉	산2-44	임	1,063	173	
	산2-45	임	23,380	530	
	산2-72	임	11	3	
계			24,454	706	

###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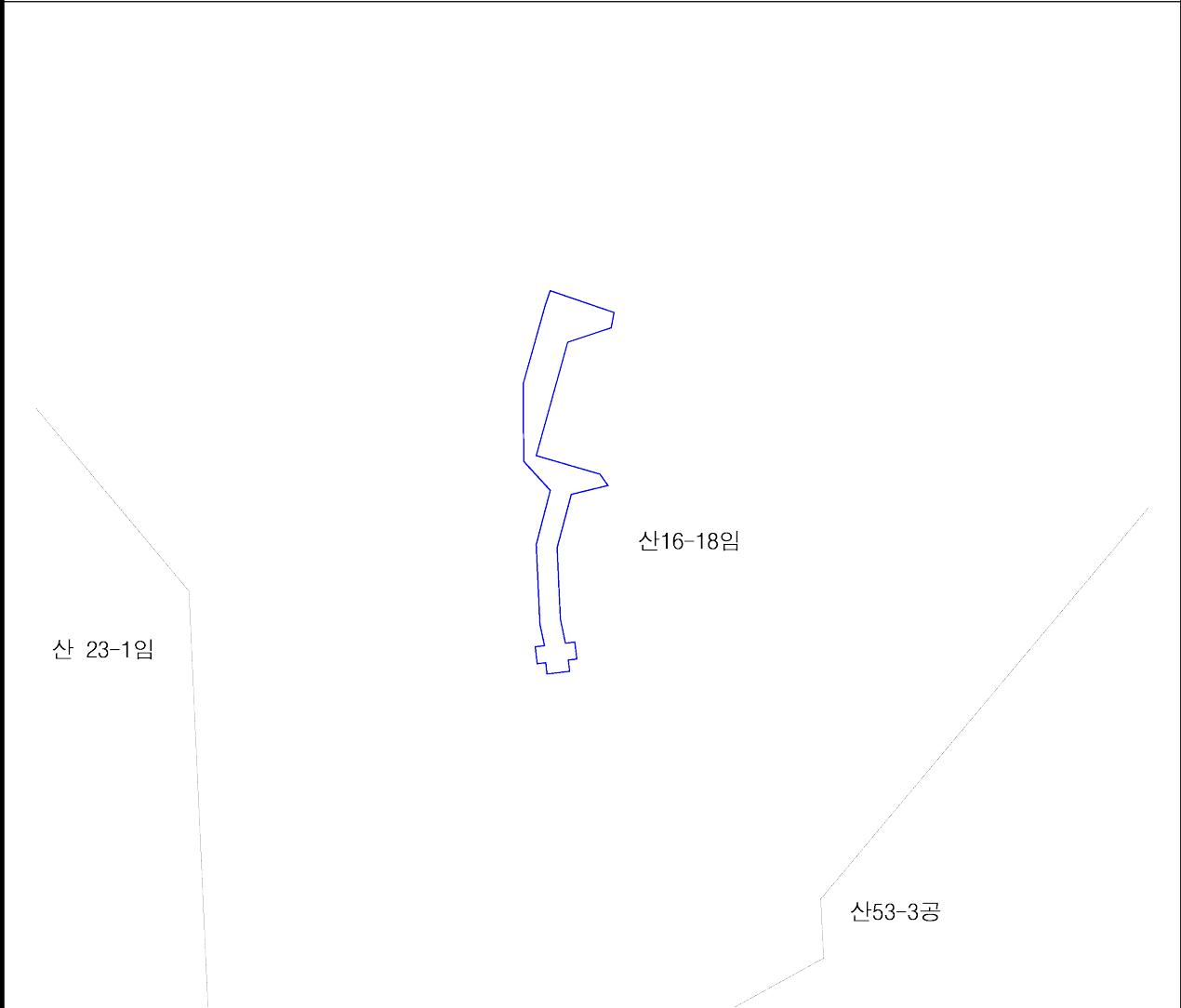


<보기>  : 산사태취약지역

<지정내용>

토지소재지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	
시·구·동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	고시번호·일자
오류동	산13-4	임	200	120	
	산13-8	임	2,732	160	
	산13-7	임	193	15	
	145-195	공	161	70	
	산15-11	임	1,433	60	
	333-15	임	1,814.4	15	
	333-4	임	342.8	10	
계			6,876.2	450	

###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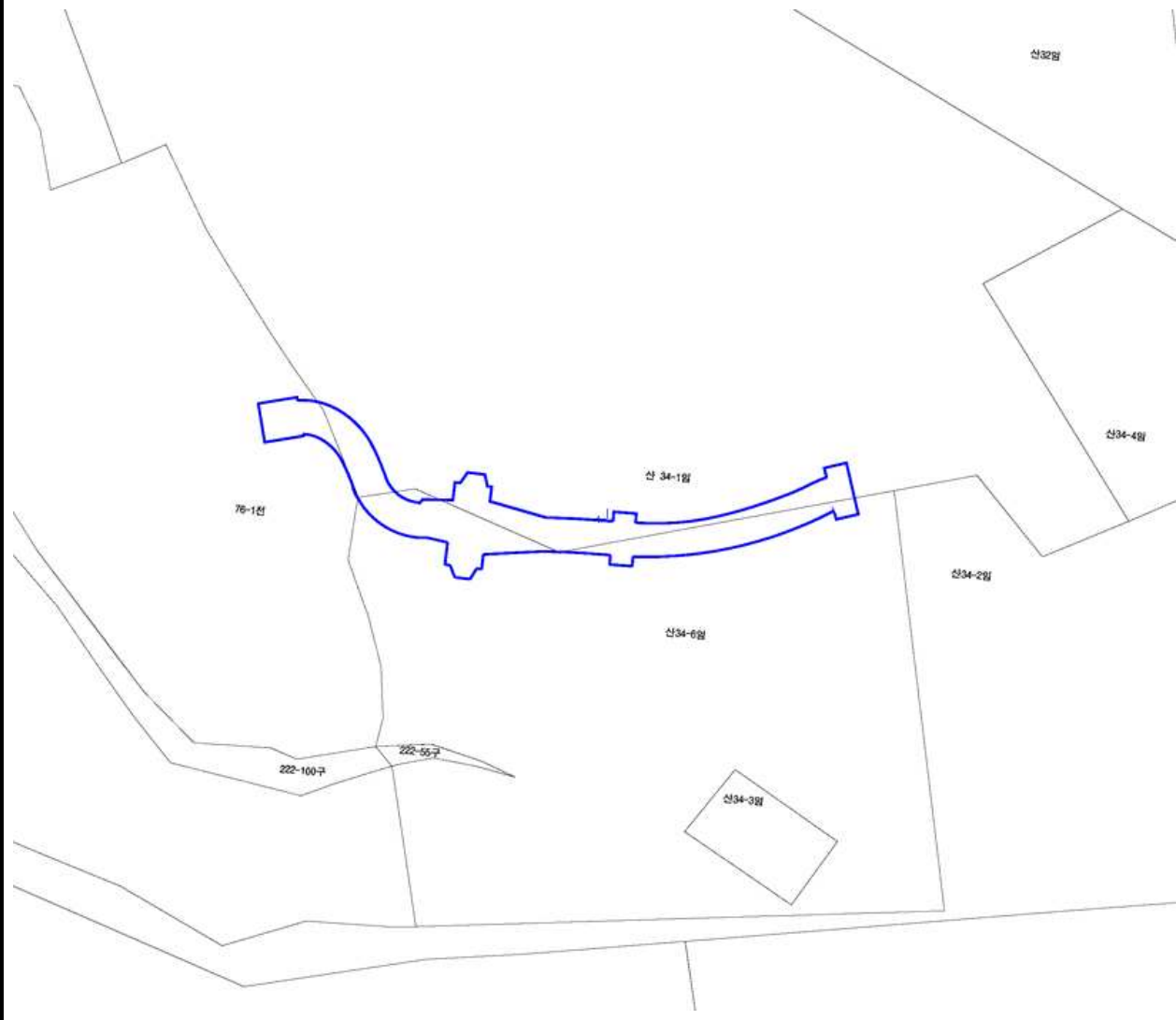


<보기>  : 산사태취약지역

<지정내용>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
시·구·동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	고시번호·일자
오류동	산16-18	임야	95,066	358	
계			95,066	358	

###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



<보기>  : 산사태취약지역

<지정내용>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
시·구·동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	고시번호·일자
항동	76-1	전	3,816	50	
	산34-1	임야	9,574	200	
	산34-6	임야	3,273	220	
계			16,663	470	



#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## 「산림보호법」 발취

제45조의10(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)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2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제45조의11(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)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,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·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·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·금지하거나 보수·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한다.

제54조(벌칙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4.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